

<p>제2021-30호 2021년 2월 16일(화)</p>	<p><b>시 보</b></p>  <p>여수시</p>	<p><b>시 정 지 표</b></p> <p>시민공감 감동시정 균형있는 상생경제 사람중심 나눔복지 품격있는 문화관광 살기좋은 정주환경</p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	--

■ 발행인 : 여수시장 ■ 발행소 : 공보담당관실 / 여수시 시청로 1(학동) ☎ 659-3028 FAX) 659-5803

고 시

공 고

- 여수시 공고 제2021-496호 도로지정공고(돌산읍 둔전리 930번지) 3
- 여수시 공고 제2021-508호 「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
- 여수시 공고 제2021-512호 「여수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9
- 여수시 돌산읍 공고 제2021-4호 돌산읍 주민자치위원(제기) 인적사항 공고 21

기 타

회 람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

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



## 도로지정 공고

여수시 돌산읍 둔전리 935번지 건축신고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,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·공고합니다.

### 1. 도로 지정 공고 내역

도 로 위 치	도로길이 (m)	도로너비 (m)	도로면적 (㎡)	관련지번 및 이해 관계인 동의 여부	비고
돌산읍 둔전리 930번지	34	4	89	도로대장 참조 (허가민원과 비치)	

### 2. 관련도서 : 생략(여수시청 허가민원과에 비치)

### 3. 기타사항

도로 지정과 관련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청 허가민원과  
(061-659-411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2021. 2. 16.

여 수 시 장

## 공 고

「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」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(행정상 입법예고) 및 「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5조(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2월 16일

## 여 수 시 장

###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#### 1. 개정취지

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범위에 따라 공무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 일수 및 사용횟수를 확대하여 공직자의 사기진작 및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함

#### 2. 주요내용

- 장기재직휴가 일수 및 사용횟수 확대(제18조제6항)
  - 재직기간 30년 이상 : 장기재직휴가 20일 → 30일
  - 장기재직휴가 사용횟수 : 4회 → 6회

#### 3. 개정 조례안 : 별첨

#### 4. 입법예고기간 : 2021. 2. 16. ~ 3. 8.(20일간)

## 5. 의견제출

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(참조: 총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가. 의견제출 사항
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의견 제출자의 주소,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), 연락처
- 기타 의견

나. 의견제출 방법 : 직접방문, 우편, 이메일, 팩스(번호 061-659-5807)

### 다. 기타 참고사항

- 우편주소 : 여수시 시청로 1(학동, 여수시청 총무과) (59675)
- 업무담당자 : 총무과 백기광(gikwang0906@korea.kr)

## 6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총무과(전화 061-659-3093, 팩스 061-659-5807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조례명 :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안 항목별 내용	찬성여부		의견(사유)	기타 참고사항
	찬성	반대		

##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6항 중 “4회”를 “6회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“20일”을 “30일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장기재직 휴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 휴가를 이미 사용한 공무원은 이 조례 제18조제6항 각 호에 따른 휴가 일수에서 그 사용한 일수를 공제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<p>제18조(특별휴가) ① ~ ⑤ (생   략)</p> <p>⑥ 공무원은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각 재직기간 (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한다)별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다. 이 경우 각 재직기간별 휴가일수는 해당 재직기간 내에 4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,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.</p> <p>1. ~ 2. (생   략)</p> <p>3. 재직기간 30년 이상 : 20일</p>	<p>제18조(특별휴가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6회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: 30일</p>

## 공 고

「여수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(행정상 입법예고) 및 「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5조(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2월 16일

## 여 수 시 장

### 「여수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#### 1. 개정이유

- 「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」 일부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여 폐기물 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함

#### 2. 주요내용

- 여수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여수시 폐기물관리 조례(수정)
  - 상위법 「폐기물관리법」과 제명 통일
- 안 제2조(정의) 제4항 “재활용가능폐기물” 분류대상 품목(추가)
  - (별표2)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요령
    - ▶ (기존) 4종(종이팩, 유리병, 금속캔, 합성수지류) 이상 선택적 분리배출 ⇒ (개선) 골판지, 무색 페트병을 구분하여 별도 배출하도록 추가
    - ▶ 종이류 비해당 품목 명시 등 재활용품 품목 조정 및 배출요령 현행화
- 안 제8조(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지정 등) 제1항
  - (별표3) 생활폐기물관리 제외구역(조정)

- ▶ 돌산읍 군내리 송도 등 20개소 → 제외 구역 15개소
- 안 제11조(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) 제1항 다목(삭제)
- 안 제18조(종량제봉투의 종류·재질 등) 제1항
  - 종량제봉투는 매립용·소각용·재사용·공공용으로 구분하고 매립용에는 불연성 폐기물을 소각용·재사용에는 가연성 폐기물을
    - ▶ 매립용·소각용 → 일반용(수정)
    - ▶ 매립용에는 불연성 폐기물을(삭제)
    - ▶ 소각용·재사용에는 가연성 폐기물을 → 일반용·재사용에는 생활폐기물을(수정)
- 안 제18조(종량제봉투의 종류·재질 등) 제2항
  - 봉투의 색상은 가연성은 연두색, 불연성은 흰색
    - ▶ 가연성은 연두색 → 일반용은 연두색(수정)
    - ▶ 불연성 흰색(삭제)
- 안 제22조(종량제봉투등의 공급 업무 대행) 제1항 1호
  - 「여수시 재무회계 규칙」 제99조 →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 제99조제1항(근거 규칙 수정)
- 안 제23조(생활폐기물의 배출 수수료의 부과·징수) 제3항
  - 100리터 종량제봉투 제작 중단으로 가격, 종량 등 항목(삭제)
- 안 제25조(수수료의 감면) 제1항 제3호
  -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로서 →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으로서
- 안 제25조(수수료의 감면) 제2항
  - 1인당 매월 60리터 범위 → 1명당 매월 60리터 범위
- 부칙 추가
  - 제4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하였거나 판매한 100리터 종량제봉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.

### 3. 개정안 : 별첨

#### 4. 입법 예고기간 : 2021. 2. 16. ~ 2021. 3. 8.(20일간)

#### 5. 의견제출

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여수시장(도시미화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## 가. 의견제출 사항

- 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2) 의견제출자 주소,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), 전화번호

##### 3) 기타 참고사항 등

가) 주 소 : 우)59713 여수시 여서1로 101(여서동) 여수시장(도시미화과)

나) 전 화 : 061)659-3833, 팩스 : 061)659-5824

다) 이메일(E-Mail) : pds011@korea.kr

##### 나. 의견제출 방법 : 서면, 팩스(FAX), 직접방문, 이메일(E-Mail) 제출

##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조례명 : 「여수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규칙안 항목별 내용	찬성여부		의견(사유)	기타 참고사항
	찬성	반대		

## 여수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여수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「여수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」”를 “「여수시 폐기물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(이하 “생활폐기물배출자”라 한다)가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종류별, 성질·상태별로 시장이 정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.”를 “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(이하 “생활폐기물배출자”라 한다)는 생활환경 보전 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해야 하며,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류별, 성질·상태별로 분리·보관해야 한다.”로 한다.

제11조제1항제1호 “다목”을 삭제한다.

제11조제1항제3호 “대형폐기물 : 별표 1에 따른 대형폐기물스티커를 부착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배출”을 “대형폐기물 : 별표 1에 따라 대형폐기물스티커를 부착하여 시장이 정하는 일정한 장소에 배출”로 한다.

제11조제1항제4호 “재활용가능폐기물 : 별표 2의 방법으로 분리·보관한 후에 지정장소나 지정용기에 배출”을 “재활용가능폐기물 : 환경부의 「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」 별표 1에 따라 분리·보관한 후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일정한 장소에 배출”로 한다.

제18조제1항 “종량제봉투는 매립용·소각용·재사용·공공용으로 구분하고, 매립용에는 불연성폐기물을 소각용·재사용에는 가연성폐기물을 공공용에는 도로변, 골목길 및 공한지 폐기물 등을 각각 담아야 한다.”를 “종량제봉투는 일반용·재사용·공공용으로 구분하고, 일반용·재사용에는 생활폐기물을 공공용에는 도로변, 골목길 및 공한지 폐기물 등을 각각 담아야 한다.”로 한다.

제18조제2항 단서 중 “다만, 봉투의 색상은 가연성은 연두색, 불연성은 흰색, 재사용은 하늘색, 공공용은 옅은 청색으로 한다.”를 “다만, 봉투의 색상은 일반용은 연두색, 재사용은 하늘색, 공공용은 옅은 청색으로 한다.”로 한다.

제22조제1항제1호 중 “「여수시 재무회계 규칙」 제99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”를 “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 제99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”로 한다.

제25조제1항제3호 중 “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로서”를 “제1호 및 제2회 외의 사람으로서”로 한다.

제25조제2항 중 “시장은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공급하고자 할 때에는 1인당 매월 60리터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.”를 “시장은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공급하고자 할 때에는 1명당 매월 60리터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.”로 한다.

## 부칙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.

제4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하였거나 판매한 100리터 종량제봉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여수시 <u>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</u></p> <p><b>제11조(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)</b></p> <p>① <u>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, 점유자 또는 관리자(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“라 한다)가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수 없을 때에는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종류별, 성질·상태별로 시장이 정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1.(생략)</p> <p>가. 50리터 종량제봉투: 10킬로그램 이하 나. 75리터 종량제봉투: 15킬로그램 이하 다.100리터 종량제봉투: 15킬로그램 이하</p> <p>2.(생략)</p> <p>3. 대형폐기물 : 별표 1에 따른 대형 폐기물스티커를 부착하여 시장이 <u>지정하는 장소에 배출</u></p> <p>4. 재활용가능폐기물 : <u>별표 2의 방법으로 분리·보관한후에 지정장소나 지장용기에 배출</u>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(생략)</p> <p>④ (생략)</p> <p>1.~ 2.(생략)</p> <p>⑤ (생략)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여수시 <b>폐기물관리 조례</b></p> <p><b>제11조(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)</b></p> <p>① <b>법 제15조제1항 및 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(이하 “생활폐기물배출자”라 한다)는 생활 환경 보전 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해야 하며,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류별, 성질·상태별로 분리·보관해야 한다.</b>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가.----- 나.----- <b>다. (삭 제)</b>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-----<b>정하는</b> <b>일정한 -----</b></p> <p>4. ----- <b>환경부의 「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」 별표 1에 따라 분리·보관한 후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일정한 장소에 배출</b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1.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

제18조(종량제봉투의 종류·재질 등)

① 종량제봉투는 매립용·소각용·재사용·공공용으로 구분하고, 매립용에는 불연성폐기물을 소각용·재사용에는 가연성폐기물을 공공용에는 도로변, 골목길 및 공한지 폐기물 등을 각각 담아야 한다.

② 종량제봉투의 재질은 고밀도합성수지, 생분해성, 탄산칼슘 함유 봉투 중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와 주민의 사용 편리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, 재질별 규격은 단체표준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. 다만, 봉투의 색상은 가연성은 연두색, 불연성은 흰색, 재사용은 하늘색, 공공용은 옅은 청색으로 한다.

③ (생략)

제22조(종량제봉투등의 공급 업무 대행) ① (생략)

1. 「여수시 재무회계 규칙」 제99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종량제봉투등의 적정보관이 가능한 창고를 보유하고 읍·면·동별 지점 및 판매망을 갖춘 금융기관

② (생략)

③ (생략)

제25조(수수료의 감면) ① (생략)

1. (생략)  
2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

제18조(종량제봉투의 종류·재질 등)

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·재사용·공공용으로 구분하고, 일반용·재사용에는 생활폐기물을 공공용에는 도로변, 골목길 및 공한지 폐기물 등을 각각 담아야 한다.

②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----- . 다만, 봉투의 색상은 일반용은 연두색, 재사용은 하늘색, 공공용은 옅은 청색으로 한다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22조(종량제봉투등의 공급 업무 대행) ① (현행과 같음)

1.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 제99조제1항-----  
-----  
-----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(현행과 같음)

제25조(수수료의 감면) ① (현행과 같음)

1. (현행과 같음)  
2. -----  
-----  
-----

족 또는 가족 중에서 「여수시 국가보  
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  
례」에 따른 참전·보훈 명예수당을  
받는 사람

3.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로서  
시장이 정하는 사람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  
투를 무료로 공급하고자 할 때에는  
1인당 매월 60리터 범위 내에서 지  
급하여야 한다.

**부 칙**

제1조 ~ 제3조(생 략)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3. ----- **사람으로서**  
-----

② -----  
-----  
**1명당** -----  
-----.

**부 칙**

제1조 ~ 제3조(현행과 같음)

**제4조(경과조치)** 이 조례 시행 당시  
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하였거나  
판매한 100리터 종량제봉투는  
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할 수  
있다.

현행	개정안
<p>[별표2]</p> <p><u>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요령</u> (제2조 및 제11조 관련)</p>	<p>[별표2]</p> <p>(삭제)</p>

현 행

개 정 안

[별표3]

**생활폐기물관리 제외구역** (제8조제1항 관련)

[별표3]

**생활폐기물관리 제외구역** (제8조제1항 관련)

읍 면 동	법정동리	행정동리명 및 자연부락명	면 적(km <sup>2</sup> )	비 고
계	13	20(1)	17.1	
돌 산 읍	군 내 리	송 도	0.8	
울 촌 면	여 동 리	송 도	1.0	
		장 도	0.4	
화 양 면	이 천 리	운두도(1)	0.1	
남 면	두 라 리	대 두	0.3	
		봉 통	0.7	
		나 발	0.3	
	횡 간 리	횡 간	0.4	
화 정 면	월 호	월 호	1.9	
		자 봉	0.3	
	제 도 리	제 도	1.0	
	하 화 리	하 화	0.7	
	상 화 리	상 화	0.7	
	낭 도 리	사 도	0.4	
		규 포	0.7	
	여 산	여 산	4.7	
		조 발 리	조 발	0.7
	둔 병	둔 병	0.6	
적 금 리		적 금	0.7	
여 자 리	여 자	0.7		

읍 면 동	법정동리	행정동리명 및 자연부락명	면 적(km <sup>2</sup> )	비 고
계	11	15(1)	10	
돌 산 읍	군 내 리	송 도	0.8	
울 촌 면	여 동 리	송 도	1.0	
화 양 면	이 천 리	운두도(1)	0.1	
남 면	두 라 리	대 두	0.3	
		봉 통	0.7	
		나 발	0.3	
	횡 간 리	횡 간	0.4	
화 정 면	월 호	월 호	1.9	
		자 봉	0.3	
	제 도 리	제 도	1.0	
	하 화 리	하 화	0.7	
	상 화 리	상 화	0.7	
	낭 도 리	사 도	0.4	
	조 발 리	조 발	0.7	
	여 자 리	여 자	0.7	

현 행

개 정 안

[별표6]

**종량제 봉투 판매가격** (제23조제3항 관련)

[별표6]

**종량제 봉투 판매가격** (제23조제3항 관련)

종류	5 l	10 l	20 l	30 l	50 l	75 l	100 l
판매가격 (원)	140	250	500	720	1,200	1,800	2,400
배출중량					10kg 이하	15kg 이하	20kg 이하

종류	5 l	10 l	20 l	30 l	50 l	75 l
판매가격 (원)	140	250	500	720	1,200	1,800
배출중량					10kg 이하	15kg 이하

※ 폐기물 배출 밀도 0.2kg/l 이하

※ 폐기물 배출 밀도 0.2kg/l 이하

# 주민자치위원 인적사항 공고

현 황

- 위원회명 : 여수시 돌산읍주민자치위원회
- 위 원 장 : 김 성 문
- 위원구성 : 25명(남 19명, 여 6명)

위원별 인적사항

연번	직위	성명	연령	성별	주 소	위촉일자	임기만료 일 자	비 고
1	위원장	김성문	59	남	개인정보 미공개	2021.01.01.	2022. 12.31.	
2	부위원장	강문평	64	남	“	“	“	
3	감 사	홍화섭	60	남	“	“	“	
4	사무국장	주 현	51	남	“	“	“	
5	위 원	차운석	57	남	“	“	“	
6	위 원	전용근	56	남	“	“	“	
7	위 원	박상덕	51	남	“	“	“	
8	위 원	권명철	50	남	“	“	“	
9	위 원	김순희	58	여	“	“	“	
10	위 원	김경은	50	여	“	“	“	
11	위 원	문영권	56	남	“	“	“	
12	위 원	김석환	37	남	“	“	“	
13	위 원	허용문	45	남	“	“	“	
14	위 원	이영삼	44	남	“	“	“	

연번	직위	성명	연령	성별	주 소	위촉일자	임기만료 일 자	비 고
15	위 원	김영관	67	남	개인정보 미공개	2021.01.01.	2022.12.31.	
16	위 원	박치일	65	남	“	“	“	
17	위 원	유순화	49	여	“	“	“	
18	위 원	김은정	47	여	“	“	“	
19	위 원	양선남	70	여	“	“	“	
20	위 원	정연오	57	남	“	“	“	
21	위 원	박기옥	51	여	“	“	“	
22	위 원	여영길	69	남	“	“	“	
23	위 원	제상국	64	남	“	“	“	
24	위 원	유태성	58	남	“	“	“	
25	위 원	이우현	48	남	“	“	“	

위와 같이 돌산읍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인적사항을 공개합니다.

2021년 2월 16일

**여 수 시 돌 산 읍 장**